

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2. 9. 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노인장애인과장

가. 제안이유

정신적·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의 위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 :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

2) 민간위탁 내용

(가) 민간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7.12.31.(5년)

(나) 수탁자 선정방식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(재계약)

3)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(가)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
(나)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

(다) 재가노인복지사업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

4) 위탁시설 개요

(가) 소재지: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8-14(상수동) (☎ 02-325-3850)

(나) 시설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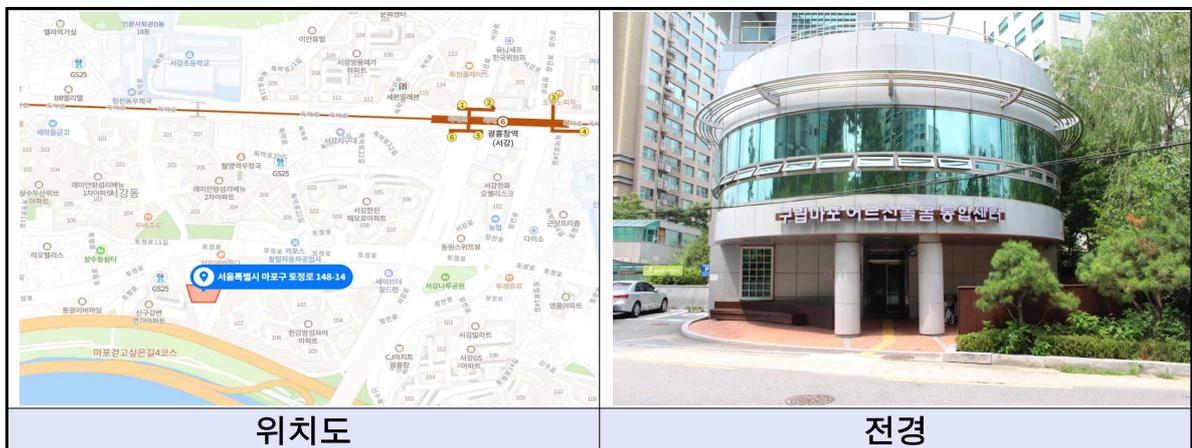
- 건물규모: 지하1층/지상3층(지상 2,3층 사용)

- 면적: 750.31 m^2 (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면적)

- 층별현황

층별	용도	면적(m^2)	비고
계		1,924.29	
3층	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(대강강, 휴게실)	300.38	750.31
2층	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(센터장실, 사무실, 상담실, 교육실, 프로그램실, 자원봉사자실, 조리실)	449.93	
1층	어린이집	477.02	
B1층	주차장, 기계실, 서강동 주민자치회관(별관)	696.96	

(다) 위치도 및 전경



위치도

전경

5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2년 예산 기준)

(가) 소요예산: 2,256,722천원(국비 855,629천원, 시비 873,843천원, 구비 527,250천원)

(나)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산출근거	비고
계	2,256,722		
운영비	314,934	· 재가노인시설 운영비: 252,434천원 · 마포어르신돌봄 운영지원비: 62,500천원	시비(80%) 구비(20%)
사업비	1,941,788	· 노인맞춤돌봄(돌봄시비, IOT 포함): 1,677,788천원 ·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: 184,680천원 · 무료급식지원사업: 79,320천원	국비(44%) 시비(32%) 구비(24%)

6) 세부추진일정

(가)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 : 2022.10.27.

(나)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(선정): 2022.11.10.

(다) 재계약체결: 2022.11.16

※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(서울시) 준수하여 민간 위탁 진행

3. 검토보고 (김동원 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『노인복지법』 제39조 및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34조,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 제21조,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에 근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인 “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”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.
- 현 시설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과의 위탁기간 만료('22.12.31.)가 도래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

향후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5년,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.

- 본 건 “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”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5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.
- 따라서, 본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관련법규]

[노인복지법]

제39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[사회복지사업법]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]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[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>

[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<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>

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